KOSHA GUIDE

C - 49 - 2012

11. 안전대의 폐기

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안전대는 폐기하여야 한다.

- (1)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로우프는 폐기하여야 한다.
- (가)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.
- (나) 페인트, 기름, 약품, 오물 등에 의해 변질된 것.
- (다) 비틀림이 있는 것
- (라) 횡마로 된 부분이 헐거워진 것
- (2)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벨트는 폐기하여야 한다.
- (가) 끝 또는 폭에 1㎜ 이상의 손상 또는 변형이 있는 것.
- (나) 양끝의 헤짐이 심한 것.
- (3) 벨트에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.
- (가) 재봉 부분의 이완이 있는 것
- (나) 재봉실이 1개소 이상 절단되어 있는 것.
- (다) 재봉실의 마모가 심한 것.
- (4)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D링 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.
- (가) 깊이 1㎜ 이상 손상이 있는 것.



[특히 <그림 3>의 × 부분]

<그림 3> D링